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3가단116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가. 2020. 10. 16.에 한 124,510,338원의 증여계약을,
나. 2020. 11. 30.에 한 7,570,019원의 증여계약을,
다. 2021. 4. 3.에 한 2,801,38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881,738원 및 그 중 124,510,338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7,570,019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2,801,381원에 대하여는 2021. 4. 3.부터 각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0001 물품대금 사건의 2019. 5. 22.자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47,241,133원 및 그 중 231,157,960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낙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9. 16.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C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소송을 할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재산이 없다.

라. 피고는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는 아내 F로부터 받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F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124,510,338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제1증여'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C는 부모인 H, I이 사망함에 따라 자신이 상속한 망인들의 채권을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20. 11. 30.에 7,570,019원을 받고(이하 '제2증여'라 한다), 2021. 4. 3.에 1,801,381원을 받음(이하 '제3증여'라 한다)으로써 위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자신의 처였던 소외 F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704713)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채권 중 2억 원을 가압류하였고(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단30024),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위 가압류된 2억 원 중 153,957,892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61814).

2) C는 2020. 10. 15.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124,510,338원을 수령함에 있어, 2020. 10. 16. 피고 명의 계좌에 이를 입금받았고, 피고는 ‘생활비에 보태라’는 C의 말에 따라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20. 10. 16. 피고에게 위 124,510,338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1증여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채권자인 소외 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제2증여 및 제3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의 모친 I은 2020. 9. 7. 사망하고, 부친 H은 2020. 10. 24. 사망하였는데, 그들 사이의 자녀는 C, 소외 K, L, M, N, O이다.

2) O은 I 및 H의 상속인 대표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20. 11. 25. H 상속금 명목으로 2,470,585원, I 상속금 명목으로 15,466,119원을 입금받고, 우체국에서 3건 합계 27,483,41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I, H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액 45,420,114원을 입금받은 후, 2020. 11. 30. ‘부모님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상속인들인 K, L, M, N에게 7,570,019원씩을 나누어 송금해주었고, C 몫에 대해서는 C의 말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해주었으며, 피고는

생활비에 보태라'는 C의 말에 따라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3) 또한 H과 I이 조합원탈퇴에 따른 정산금, 배당금 등의 채권이 있는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O은 상속인 대표로서 2020. 12. 23.부터 2021. 2. 3.까지 위 명목으로 합계 21,290,322원을 입금받은 후, 2021. 4. 3. '부모님상속'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상속인들인 K, L, M, N에게 각 2,801,381원씩을 나누어 송금해주었고, C 몫에 대해서는 C의 말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해주었으며, 피고는 생활비에 보태라'는 C의 말에 따라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내지 16,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2020. 11. 30.에 7,570,019원을 증여(제2증여)하고, 2021. 4. 3.에 1,801,381원을 증여(제3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채권자인 소외 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친인 C가 생활비 등에 사용하라고 하여 돈을 받았을 뿐 제1, 2, 3증여가 C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제1, 2, 3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를 승계한 원고에게 134,881,738원(제1, 2, 3증여의 합계액) 및 그 중 124,510,338원(제1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20. 10. 16.부터, 7,570,019원(제2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20. 11.

30.부터, 2,801,381원(제3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21. 4.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1) 원고는 주문 제1항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가. 2020. 10. 16.에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G 사건의 배당금 수령에 관한 증여계약을, 나. 2020. 11. 30., 2021. 4. 3.에 한 망 H, I의 사망에 따른 상속금 수령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문에 기재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다만 그 증여계약을 특정하는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